

목 차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1
제2조 이용계약	1
제3조 계약기간	1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2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2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2
제9조 계약해지	2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5년 급여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4년도 대비 평균 3.93%인상

2025.01.01 시행

재가급여 등급별 이용 월 한도액 (복지용구제외)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추가산정	*월 한도액 초과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주야간보호급여 월15일(1일 8시간)이상 이용	초과금액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
추가산정	2,537,040	2,291,740	1,782,840	1,644,720	1,412,400	-		
* 방문,목욕,간호,주야간,단기보호 중 급여비용 합산하여 등급별 월 한도액 적용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 요양,간호,주야간 : 야간, 일요일, 공휴일 급여비용의 20%~50% 가산 적용							시설급여	20%
* 본인부담금 = 총급여비용 X 수급자유형							재가급여	15%
								40%감경
								60%감경
								기초
								8%
								0%
								6%
								0%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가족60분 가족90분

구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20일	31일
급여비용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491,600	1,026,720
15% 본부금	2,540	3,680	4,960	6,320	7,370	8,300	9,250	10,200	73,740	154,000
9% 본부금	1,520	2,210	2,980	3,790	4,420	4,980	5,550	6,120	44,240	92,400
6% 본부금	1,010	1,470	1,980	2,520	2,940	3,320	3,700	4,080	29,490	61,600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당)

방문간호 급여비용 (방문당)

구분	차량(차량)	차량(가정)	차량 미이용	구분	15~30분	30~60분	60분 이상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보건소/지소
급여비용	86,480	77,970	48,690	급여비용	41,710	52,310	62,930	의사소견서	61,040	58,970
15% 본부금	12,970	11,690	7,300	15% 본부금	6,250	7,840	9,430	치매진단	29,220	26,510
9% 본부금	7,780	7,010	4,380	9% 본부금	3,750	4,700	5,660	방문간호지시서	의사소견서	보건소/지소
6% 본부금	5,180	4,670	2,920	6% 본부금	2,500	3,130	3,770	의료기관방문	22,680	6,090
								가정방문	70,030	13,140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1일당)

단기보호 급여비용 (1일당)

구분	3시간이상	6시간이상	8시간이상	10시간이상	13시간초과	구분	급여비용	15% 본부금	9% 본부금	6% 본부금
1등급	40,650	54,490	67,770	74,660	80,060	1등급	71,970	10,790	6,470	4,310
15% 본부금	6,090	8,170	10,160	11,190	12,000	2등급	66,640	9,990	5,990	3,990
9% 본부금	3,650	4,900	6,090	6,710	7,200	3등급	61,560	9,230	5,540	3,690
6% 본부금	2,430	3,260	4,060	4,470	4,800	4등급	59,940	8,990	5,390	3,590
2등급	37,630	50,470	62,780	69,160	74,170	5등급	58,300	8,740	5,240	3,490
15% 본부금	5,640	7,570	9,410	10,370	11,120	노인요양시설 2.1 (1일당)				시설 비급여
9% 본부금	3,380	4,540	5,650	6,220	6,670	2.1:1	1등급	2등급	3,4,5등급	식재료비
6% 본부금	2,250	3,020	3,760	4,140	4,450	31일	90,450	83,910	79,240	0
3등급	34,740	46,590	57,960	63,900	68,520	월금액	2,803,950	2,601,210	2,456,440	이미용비
15% 본부금	5,210	6,980	8,690	9,580	10,270	20% 본부금	560,790	520,240	491,280	0
9% 본부금	3,120	4,190	5,210	5,750	6,160	12% 본부금	336,470	312,140	294,770	총비급여
6% 본부금	2,080	2,790	3,470	3,830	4,110	8% 본부금	224,310	208,090	196,510	0
4등급	33,160	45,000	56,380	62,290	66,930	노인요양시설 2.3 (1일당)				
15% 본부금	4,970	6,750	8,450	9,340	10,030	2.3:1	1등급	2등급	3,4,5등급	대면-계약의사
9% 본부금	2,980	4,050	5,070	5,600	6,020	31일	86,030	79,810	75,360	초진비용
6% 본부금	1,980	2,700	3,380	3,730	4,010	월금액	2,666,930	2,474,110	2,336,160	18,410
5등급	31,580	43,400	54,780	60,710	65,350	20% 본부금	533,380	494,820	467,230	재진비용
15% 본부금	4,730	6,510	8,210	9,100	9,800	12% 본부금	320,030	296,890	280,330	13,160
9% 본부금	2,840	3,900	4,930	5,460	5,880	8% 본부금	213,350	197,920	186,890	
6% 본부금	1,890	2,600	3,280	3,640	3,920	공동생활가정 (1일당)				비대면-계약의
인지지원등급	31,580	43,400	54,780	60,710	65,350	구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초진비용
15% 본부금	4,730	6,510	8,210	9,100	9,800	31일	72,480	67,250	62,000	9,210
9% 본부금	2,840	3,900	4,930	5,460	5,880	월금액	2,246,880	2,084,750	1,922,000	재진비용
6% 본부금	1,890	2,600	3,280	3,640	3,920	20% 본부금	449,370	416,950	384,400	6,580
주·야간보호 비급여비용						12% 본부금	269,620	250,170	230,640	
식재료비	0	이미용비	0	총비급여	0	8% 본부금	179,750	166,780	153,760	